

주요國家 營業 祕密 관련法

目 次

I. 美國의 統一營業祕密法(Uniform Trade Secret Act)

II. 日本의 改正 不正競争防止法

III. 獨逸의 不正競争防止法

〈이번號에 全載〉

I. 美國의 統一營業祕密法 (Uniform Trade Secret Act)"

1. 第1條(定義)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단어는 문맥으로부터 별도의 의미가 요구되지 않는 한,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해진 의미를 지닌다.

① ‘부정한 수단’은 절도, 뇌물수수, 부실 표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또는 위반의 권유 또는 전자 혹은 기타 수단에 의한 스파이행위가 포함된다.

② ‘부정 행위’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1) 영업비밀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가 다른사람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2) 다음과 같은 자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공개 또

는 사용하는 것.

(i)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자

(ii) 해당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영업비밀이 다음과 같은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

(a)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자를 통하거나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된 것.

(b) 해당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의무 또는 사용제한 의무가 발생 되는 중에 취득한 것

(c) 영업비밀의 유지 혹은 그것의 제한적 사용을 위해 구제를 청구한 사람의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호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혹은 그 사람을 통해 취득된 것

(iii) 자신의 물질적인 변화에 앞서, 그것이 영업비밀이고, 우연, 또는 과실에 의해 취득된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자.

③ “자”(者)란, 자연인, 법인(corporation), 사업신탁(business trust), 재산(estate), 신탁(trust), 조합(partnership), 사단(association), 공동출자사업(joint venture), 정부, 정부의 각 부서 혹은 정부요원, 또는 기타 법적, 혹은 사업적 실체(entity)를 지칭한다.

④ “영업비밀”이란 製法(formula), 양식(pattern), 편집(compilation), 프로그램, 고안(device), 방법,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1)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따라서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2)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第2條 中止에 의한 救濟(injunctive relief)

① 현실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위협이 되는 부정행위는 금지시킬 수 있다.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재판소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은 종료된다. 단, 부정행위에 의해 획득된 상업상의 이득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적정 기간을 지속시킬 수 있다.

② 예외적인 경우, 금지명령은 적절한 로얄티 지불에 의해 미래사용을 제약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란, 금지적 정지명령을 불공평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알기 전에, 혹은 알아야 할 이유가 있기에 앞서 물질적이고 불이익한 지위가 변화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第3條 損害賠償

① 부정행위를 알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기에, 실질적이고 불이익한 지위의 변경이 금전 배상을 불공평하게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에는 부정행위에 의한 현실의 손실 및 현실의 손실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 부당이익 모두 포함된다. 영업비밀 부정행위자에 의한 허락하지 않은 공개 또는 사용에 대하여, 기타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손실 대신, 합리적인 로얄티지불을 부과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고의(willful) 또는 악의(malicious)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a)항에 의한 액수의 2배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第4條 辯護士費用

① 부정행위의 청구가 악의(bad faith)로 이루어질 때, (ii) 정지명령의 종료 신청이 악의로 이루어지거나 악의로 지속되는 경우, (iii) 고의 또는 악의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법원은 승소판결자에 대해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第5條 祕密의 유지

이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적절한 수단에는, 공개 수속에 관련된 보전 명령, 비밀심리, 소송기록의 밀봉 및 소송 관계자에 대해 법원의 사전 승인없이 그 영업비밀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이 포함된다.

第6條 提訴期限

부정행위에 의한 소송은 부정행위가 발견된 때, 또는 적절한 주위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속적인 부정행위는 단일 청구를 구성한다.

第7條 여타 法律에 대한 効果

① 다음의 ②항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은 이 법에 저촉하는 영업비밀의 부정행위의 민사적 구제를 규정하는 불법행위법, 원상회복법, 기타 주법(洲法)을 배제한다.

②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1) 영업비밀의 부정행위에 기초해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상의 구제조치

(2) 영업비밀의 부정행위에 의하지 않은 다른 민사상의 구제

(3) 영업비밀의 부정행위에 기초해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상의 구제조치

第8條 適用 및 解釋의 統一性

이 법률은 이 법률을 제정한 주 사이에서 이 법률의 대상에 관해, 법률의 통일이라는 법률의 일반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용 또는 해석되어야 한다.

第9條 略稱

이 법률은 통일 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으로 인용할 수 있다.

第10條 分離可能性

이 법률의 특정 규정, 또는 특정 사람, 또는

특정 상황 등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는 무효로 된 규정이나 적용이외의 효력을 지닐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목적을 위해 이법의 규정은 분리가능하다.

第11條 施行의 時期

이 법률의 시행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전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시행일후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I. 日本의 改正 不正競争防止法

第1條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법 시행 지역내에서 널리 인식되는 타인의 씨명(氏名), 상호, 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수출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2) 본법 시행 지역내에서 널리 인식되는 타인의 씨명(氏名), 상호, 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상품이나 광고에, 혹은 공중(公衆)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발생시키는 행위

(4) 상품이나 광고에, 혹은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산출,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출,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5) 상품이나 광고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를 표시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6)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이를 유포하는 행위.

② 1900년 12월 14일 브뤼셀에서, 1911년 6월 2일 워싱턴에서, 1925년 11월 6일 헤이그에서, 1934년 6월 2일 런던에서, 1958년 10월 31일 리스본에서,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1883년 3월 20일의 파리조약의 동맹국(이하 간단히 동맹국으로 칭함)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상표권에 상당하는 권리에 한함 이하 같음)를 가진 자는, 대리인 대표자, 혹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인자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의 승락없이, 당해 권리에 관계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행위의 개시일 1년 이내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비밀로서 관리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하 영업비밀로 칭함)을 보유한 사업자는(이하 보유자로 칭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영업비밀에 관계된 부정행위라고 칭함)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은 자의 경우라도 그 영업비밀에 관련된 부정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1) 절도, 사기,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라 칭함) 또는 그 취득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공개하는 행위(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제시하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

(2) 기타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행위가 게재한 것을 알거나 혹은 알지 못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가 게재된 것을 알거나 알지 못하였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공개하는 행위.

(4) 보유자에 의해 제시된 영업비밀을 부정경쟁, 기타 부정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또는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행위

(5)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 공개행위(前호에 규정한 공개행위 및 비밀을 지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공개행위가 게재된 것을 알면서 혹은 알지 못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의 부정공개행위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공개행위가 게재된 점을 알거나 모르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공개하는 행위.

④ 보유자는 前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함에 있어 영업비밀에 관련된 부정행위가 조성된 대상물(영업비밀이 체화된 매체를 포함), 영업비밀에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대상물, 또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부정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폐기, 기타 영업비밀에 관련된 부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第2條의 2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조(前條)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者)는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받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조 제2항의 행위를 한자 또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행위개시일 전 일년 이내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는 이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같은 항의 상표에 관한 권리를 지닌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영업비밀에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前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한 후에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행위 또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해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친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대신하거나 손해배상과 더불어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第2條

① 前2條 및 제5조의 규정은 다음의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품의 보통 명칭(색깔로 생산물 원산지의 지방적 명칭으로 하여 보통명칭화 한 것은 제외) 또는 거래상 통상적으로 동종의 상품으로 관용(慣用)되는 표시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유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거래상 통상적으로 동종의 영업에 관용되는 명칭 기타의 표시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자기의 씨명을 선의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4) 제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언급

된 표시가 본법 시행 지역내에서 널리 인식되기 이전부터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선의로 사용한자 또는 그 자에 의해 영업과 함께 그 표시의 사용을 승계한자로서 그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5) 거래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취득시 그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행위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행위가 게재된 것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없이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에 한함)가 그 거래에 따라 얻은 權原의 범위내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공개하는 행위.

② 전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게재된 행위를 한 자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자는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방지하는데 적당한 표시를 부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단순히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는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第3條

동맹국에 속한자 이외의 외국인으로서 본법 시행지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는 자는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 제1조 2 및 전 조 제2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第3條의 (2)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같은항 각호에 규정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는 그행위를 한자가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보유자가 그 사실 및 그 행위를 한 자를 알고 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하지 않을 때는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같은항 각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자가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날때도 마찬가지이

다.

第4條

① 외국의 문장(紋章), 기장(旗章) 기타 徽章으로서 주무(主務) 대신이 지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나라의 해당 관청의 허가 없이 이를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상표로서 사용한 것을 판매 또는 반포할 수 없다.

② 전항의 문장은 그나라의 해당관청의 허가 없이 상품의 원산지의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으로, 거래상 이를 사용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반포할 수 없다.

③ 외국의 관(官)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인장 또는 기호로서 주무대신이 지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나라 해당관청의 허가 없이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반포할 수 없다.

④ 일본국의 문장(紋章), 기장(旗章) 기타 미장(徽章) 또는 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인장 또는 기호 사용의 허가를 해당관청으로부터 받은 때는, 외국의 문장, 기장, 기타 미장 또는 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 3항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第4條 (2)

동맹국이 가입한 정부간 국제기관의 문장, 기장 기타 미장, 약칭 또는 명칭으로서 주무대신이 지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해당 국제기관의 허가 없이 해당국 제기관과 관계있는 취지의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으로 이를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반포할 수 없다.

第5條

다음의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품 또는 그 광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에 대해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부정경쟁의 목적을 위해 제1조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부정경쟁의 목적을 위해 제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전 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第5條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전(前) 조의 위반행위를 한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외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같은 조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第6條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더불어 제2항, 제1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의 2 및 제5조 제2호의 규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平成 2년(1990) 6월 29일 법률 616

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날로부터 산정하여 일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해진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에 따른 정령후의 부정경쟁방지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조 제3항 및 제4항과 더불어 제1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해진 신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또는 동항 제5호에 규정한 영업비밀의 부정 공개행위에 관련된 동항에 규정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부정행위이므로 이 법률의 시행후에 행해진 것(다음 각호에 기재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및 이 법률의 시행전에 개시된 동항 제4호에 규정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신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2) 신법 제1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더불어 이 행위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Ⅲ. 獨逸의 不正競爭防止法(발췌)

第1條

업무상의 거래에서 경쟁의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17條

사업체의 종업원, 노동자 또는 수습사원으로 서, 고용관계에 입각하여 알게된 또는 알 수 있는 영업비밀을 권한 없이, 경쟁의 목적, 사리의 목적,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사업상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② 경쟁의 목적, 사리의 목적,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사업상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전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1) 다음의 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권한 없이 입수 또는 확인하는 것

- (i) 기술적인 수단 사용
- (ii) 비밀이 체화된 복제물의 작성
- (iii) 비밀이 체화된 물의 탈취

(2) 제1항에 기재된 공개중 어느 방법에 의해, 또는 자기나 제3자의 제1호에 규정한 행위에 의해 입수하거나, 기타 권한 없이 알거나 확인한 영업비밀을 권한없이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

(3) 미수는 이를 벌한다.

(4) 특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형을

〈37p에 계속〉

가진 인조석의 제조법.

【공개소 62-148383 (1987. 7. 2)】

「천연대리석조 글라스복합내화물 및 그 제조방법」

알루미늄산화물기판의 표면에 특정 글라스층을 형성시킨 크랙방지와 중량감, 고강도의 인조대리석의 제조법」

【실용공개소 55-704 (1980. 1. 7)】

「거울처럼 가공한 글라스입자를 혼합하여 연마한 인조석」

미적효과를 높임

【실용공개소 60-161140 (1985. 10. 26)】

「인조석」

투명 글라스 입자의 표면에 은을 침착시킨 골재를 인조석 반제품의 표면에 존재시키고, 골재의 일부를 연마하여 현저한 반사광과 장식성을 극도로 높임.

【실용공개소 60-161141 (1985. 10. 26)】

「인조석」

무색투명글라스 입자의 표면에 내알카리성 유색 합성수지도막을 형성한 골재의 일부를 연마하여 색조와 장식성이 다양한 인조석의 제조법.

<28p에서 계속>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공개함에 있어, 그 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행위자가 이를 외국에서 사용할때, 특히 중대한 사안으로 한다.

第18條

업무상 거래에서 위탁된 원형 또는 기술적 성질의 지도 특히 圖面, 雛形, 型紙, 처방서를 경쟁의 목적 또는 사리를 위해 권한 없이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第19條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가 있다. 의무자가

7. 금후의 전망

인조대리석은 새로운 신소재라 할 수 있는데 그 고급감, 색조, 중량감 등으로 각종 카운트탑, 위생관련 분야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리고 빌딩내의 내장재로는 경합품도 많지만 건축 내장재로서의 종래의 단순한 장식성, 고급감에서 기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예를들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 보온성과 방음성, 흡음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빌딩내장재로 앞으로 크게 신장될 분야는 흡음제와 제진제를 들수 있다.

종래의 보온재, 흡음재는 고무계, 수지계, 발포플라스틱계나 목질계가 주요 재료였지만 현재는 단순한 방음, 흡음기능뿐만 아니라 표면 장식부의 내오염성, 미감, 강도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표면에 금속판, 다공질세라믹 등을 사용한 기능성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조대리석은 내장재로서 점차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이고 복합화 등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코스트적인 면에서도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다수일 때는, 연대채무자로 한다.

第20條

① 경쟁의 목적 또는 사리를 위해 제3자를 유혹하여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한 자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려고 하는 타인의 신청을 받는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경쟁의 목적 또는 사리를 위해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신청하는 자, 또는 타인의 요구에 대해 그러한 행위를 할 의향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형법 제31조를 준용한다.

第20條의 (1)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5조 7호 (주)의 규정을 준용한다. <♣>